

2015

연 차 보 고 서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목 차

제 1 장 공직윤리제도 운영

- 1. 공직윤리제도 운영개요 1
- 2.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1

제 2 장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 1. 공직자 재산등록 4
- 2. 등록재산의 공개 6
- 3.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7
- 4.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8
- 5. 등록재산의 심사 9

제 3 장 선물신고·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주식백지신탁제

- 1. 선물신고 11
-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12
- 3. 주식백지신탁제 14

제 1 장 공직윤리제도 운영

이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및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고성군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공직자윤리법상의 제도개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산등록 및 공개현황,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활동, 선물신고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및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그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 공직윤리제도 운영개요

공직자윤리법의 도입취지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와 주식백지신탁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1년 12월 31일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8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여러 차례 제도의 보완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가. 구성원칙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임 및 심의 절차 등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1) 일반현황

○ 구성원칙 및 선임방법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고성군수가 위촉 하고 임기 2년에 1차 연임이 가능하며, 2인의 위원은 고성군 의회 의원 1명과 고성군 기획감실장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위원현황

(2014.12.31 기준)

구 분	성 명	인 적 사 항	위촉(임명)기간	비 고
위 원 장	장운석	창원지법통영지원 부장판사	2014.02.25.~2015. 2.24.	위촉직
부위원장	강영봉	고성군의회의원	2014.08.30.~의원 임기 내	위촉직
위 원	허종철	고성초등학교장	2012.09.01.~현재	위촉직
위 원	박영숙	고성군여성단체 협의회장	2011.10.15.~현재	위촉직
위 원	최양호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2014.10.13.~직위재직 내	당연직

○ 간사 및 사무인력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 간사로는 기획감사실의 감사담당을 임명하였고, 공직윤리제도 업무전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감사담당 직원(1명)을 사무인력으로 하여 원활히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 권한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심사결과의 처리
- 금융자료 조회대상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또는 제출요구 승인
- 취업제한대상자의 유관 영리사기업체 취업승인
- 기타 법령상 권한

○ 회의·의결 등 운영방법

- 회 의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의결정족수 : 일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요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현황

2014년도 중에는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차례 개최하였다.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회 수	일 시	회 의 내 용	비 고
제2014-1회	2014. 2. 5.	○ 의결사항 - 정기재산등록의무자 고지거부 심사	서면심의
제2014-2회	2014. 3.19.	○ 의결사항 - 수시재산등록의무자 고지거부 심사	서면심의
제2014-3회	2014. 4.30.	○ 의결사항 - 수시재산등록의무자 고지거부 심사	서면심의
제2014-4회	2014. 8. 6.	○ 의결사항 - 수시재산등록의무자 고지거부 심사	서면심의
제2014-5회	2014. 8. 28.	○ 의결사항 - 수시재산등록의무자 고지거부 심사	서면심의
제2014-6회	2014.11.17.	○ 의결사항 - 2014년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사항 심사 및 처분	
제2014-7회	2014.11.17.	○ 의결사항 - 수시재산등록의무자 고지거부 심사	
제2014-8회	2014.12.22.	○ 의결사항 - 2014년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사항 심사 및 처분	서면심의

제 2 장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1. 공직자 재산등록

가. 재산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서는 감사원·국가청렴위원회·국세청·관세청 소속 7급이상 공무원,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7급 이상 검찰사무직 공무원, 경사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 7급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리·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부서 7급이상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나. 등록대상 친족의 범위 및 고지거부

재산등록대상은 본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으로 하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이 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에는 당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등록대상에 포함되나 직계 존·비속 중 출가한 여(女)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피 부양 직계 존·비속이라 함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 존·비속을 말하며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이 재산등록을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등록 이전에 소득금액 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자료가 첨부된 고지거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등록대상 재산의 종류 및 가액 산정방법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고지 거부자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 전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며 소유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법 제4조, 영 제4조에서 정한 등록재산의 종류 및 가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종 류	가 액 산 정 방 법
부 동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소유권 • 건물의 소유권 • 토지·건물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공시지가(국토해양부, 시·군·구) - 아파트·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 : 공동주택 가격(국토해양부) - 주택 : 개별주택가액(국토해양부, 시·군·구) - 상가 및 기타건물: 개별공시지가(대지)+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건물) * 취득가액이 있으면 병기 - 계약금액 또는 취득가액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권·어업권 • 선박·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등의 소유권 및 저당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그리고 그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 등 명세
동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이상의 현금(수표)·예금·채권·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국채·공채·회사채·주식등 유가증권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제품포함) •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보석류 •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골동품·예술품 • 권당 500만원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무체 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금액 - 액면가액 다만,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및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은 등록기준일의 최종가격 - 출자금액 및 지분비율, 그 회사 최근사업년도의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 및 회사내역을 표시 -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그 종류·함량과 중량 -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색상 등 명세 -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그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 명세 - 취득(매도)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기준시가(국세청) 또는 실거래가액 - 종류·내용·존속기간 등 권리의 명세·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재산 내역 및 보유직위·비영리법인의 명칭·소재지·대표자·목적사업 등 명세표시

라. 재산등록현황

2014.12.31.현재 고성군 소속 등록의무자는 118명으로 그 중 공개대상자가 12명이며 비공개대상자가 104명으로 공개대상자는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공개대상자는 등록의무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관할 위원회별로 분류하면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 104명(5급~7급),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 13명(의원, 4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 1명(군수)이다.

이를 직급 또는 직종별로 분류하면 단체장 1명, 군의원이 11명, 4급 공무원이 2명, 5~7급 공무원이 104명(86%)이다.

【표 1】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단위 : 명)

기 관 별	합 계	공 개	비공개	비고
합 계	118	12	106	
군 청	107	1	106	
군 의 회	11	11	0	군의원

2. 등록재산의 공개

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가. 재산공개대상자

2014.12.31 기준의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는 총 12명으로 자치단체장 1명, 군의원 11명이다.

나. 재산공개 시기 및 방법

(1)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재산의 공개목록은 등록의무자가 작성하여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시에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등록 후 공개대상자로 신분 변동이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시 등록하고 이에 따른 재산 공개목록을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비공개대상자로 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이후의 변동사항만을 공개토록 하여 등록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2) 재산의 공개시기 및 방법

자치단체장의 재산등록사항은 전자관보에 군의원의 재산등록사항은 경상남도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다.

3.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공직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등록대상 재산을 모두 등록하는 최초 재산등록 외에 공직자로 재직하는 동안 정기적 또는 신분변동 시에 신고하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는 신규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재산 신고와 정기변동신고,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재등록의무자 변동신고 및 퇴직자 변동신고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기 변동신고

정기 변동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중 전년도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재산등록 의무자는 모두 신고대상이 된다.

2014년도 1월중 정기변동신고 대상자는 총 90명으로 이중 공개 대상자가 12명이고 비공개 대상자가 78명이다.

나. 신규등록자 최초 재산신고

신규등록자 최초 재산신고는 임용·승진 등으로 최초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와 등록의무자 중 재산 비공개 직위에서 재산을 공개하는 직위로 승진·전보된 공직자가 신분변동일 현재의 재산을 신분변동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2014년도는 최초 재산등록대상자 10명이 신고하였다.

다.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의무면제자 변동신고는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신분이 변동된(전보 또는 전직) 경우에 신분 변동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분변동 전 최근 신고(최초등록 또는 정기변동신고)일 이후 신분 변동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변동신고사항 및 신고 방법 등은 정기변동신고와 같다.

2014년도 의무면제 변동신고 대상자는 14명으로 모두 비공개 대상자이다. 한편 의무면제자는 의무면제자가 된 후 1년간 신분변동사유 발생 월에 그 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라. 재등록의무자 변동신고

재등록의무자 변동신고는 종전에 재산등록의무자로 재산등록을 하다가 퇴직·전보·강임 등으로 재산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퇴직의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한 날(또는 의무면제자로서 의무면제자 변동신고를 최종으로 한 날) 이후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014년도 재등록의무자 변동신고 대상자는 2명으로 모두 비공개 대상자이다.

마. 퇴직자 변동신고

퇴직자 변동신고는 재산등록의무자로서 퇴직한 자가 퇴직일로부터 1월 이내에 퇴직 전 최근 신고(최초등록 또는 정기변동신고) 이후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변동신고사항 및 신고방법 등은 정기변동신고와 같다.

다만, 퇴직 후 1월 이내에 다시 재산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퇴직자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기변동사항 신고로 갈음할 수 있고, 재산등록의무자가 1월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정기변동신고 사항을 퇴직자변동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2014년도 퇴직자 변동신고 대상자는 건수가 없었다.

4.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재산등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의무자가 법이 정한 사유 외에는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산등록의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엄격한 법적절차를 마련하여 공직자 개인의 재산등록과 관련된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4항에서 열람·복사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는

- ① 등록의무자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할 때
- ②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조사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의 구체적 비위사건 관련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④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등록서류의 열람·복사 신청 건수가 없었다.

5. 등록재산의 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권을 그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가. 심사내용·방법 및 절차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재산을 엄정히 심사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의무자가 제출한 등록서류의 기재내용, 기재방법, 증빙자료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등록사항의 사실여부와 누락사항을 확인하는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다.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한 재산의 일부가 관계기관의 자료와 상이할 때에는

본인에게 소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심사에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명하였다.

나. 심사결과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의 2014년도 심사대상은 2014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자와 그 후 2014.12.31까지의 신규임용 등 추가 등록자를 포함하여 총 104건이었다.

이들 등록재산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심사대상자는 성실히 등록하여 전체 심사대상 104건 중 104건은 정상 등록하였고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의 법적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는 3건이었다.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신고) 재산 심사결과 일부 재산을 누락하거나 착오 등록하는 등 성실등록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토록 결정된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보완을 명하는 문서와 함께 「주의촉구서한」 및 경고장을 발송하여 향후 재산등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제 3 장 선물신고·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주식백지신탁제

1. 선물신고

가. 개 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에게 청렴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의 선물은 외교관계 및 국제관계 유지를 위하여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공직자가 받은 일정가액 이상의 선물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직자가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한 처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아울러 공직의 품위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나. 선물신고 업무처리

(1) 선물신고 대상자

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해당되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대상자가 된다.

위와 같은 공직자의 가족이 외국 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2) 신고대상 선물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증정받은 선물로서 증정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시가로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한다.

(3) 선물의 신고절차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 등은 그 선물을 30일 이내에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4) 선물의 관리·유지 및 처분

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고, 기타 다른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선물 중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은 외교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매각처분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해당 선물을 신고한 공직자에게 매수의 의사를 알아본 뒤 그 선물에 대하여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조달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격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공매 절차에 따라 매각 처분된다.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가. 개 요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공직자가 퇴직 후 유관사기업체에서의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있다.

나. 취업제한 업무처리

(1) 취업제한 대상자

취업제한대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이다.

(2)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12월중에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며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이다.

(3) 취업제한여부 사전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처리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를,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승인요청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개시 15일전까지 퇴직당시의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이때 요청인의 퇴직당시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인의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와의
업무관련성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요청서를 접수한 관할공직자윤리위원
회는 퇴직 당시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 사무분장 및 담당업무, 근무현황 등을
심사하여 요청인의 퇴직 전 5년 이내의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 사전확인을, 퇴직 전 5년 이내의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으나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취업승인을 할 수
있다.

다. 취업제한업무 추진실적

(1) 취업제한 대상기업체 고시

2014년 12월 30일 관보에 고시한 2015년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는
총13,586개 업체로서 2012년12월28일 고시한 3,931개 업체에 비해 8,655개 업
체가 증가하였다. ※2013년도 취업제한 대상기업체 고시 없음

(2) 취업제한여부 사전확인 및 취업승인

2014년도에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사전확인 및 취업승인을
요청한 퇴직공직자는 없었다.

(3) 취업확인 일제점검결과 조치

2014년도 상·하반기 취업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
였던 부서의 업무」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었던 업체」에 취업한 퇴직자는 없었다.

3. 주식백지신탁제

가. 개 요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회사에 백지신탁토록 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도입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의 수임자인 공직자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전념하도록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 주식백지신탁 업무처리

(1)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등록의무자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중 본인 및 그 이해 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단 고지거부자 제외)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직자이다.

(2) 주식백지신탁 업무처리

○ 주식매각·백지신탁

주식백지신탁대상자는 보유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1월이내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금융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은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사실을 신고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관보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주식백지신탁대상자가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필요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등록기관은 신고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관보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